

# 방위비분담금 이자 소득 탈세 제보 내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1. 제보 내용 요지

- بانک오브아메리카(BoA) 서울지점은 은행업 및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외국계 민간상업은행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운용하여 약 4,000억 원 안팎의 이자 소득을 얻어 왔는 바, 이에 따른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약 46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세금을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과세 처분 필요성

- (1) 민간상업은행인 BoA 서울지점이 방위비분담금을 ‘미8군 군사은행(BoA)’ 명의로 국내 시중은행에 예치하는 등 이자수익을 얻은 것이 밝혀진 바, 이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해야 함.

- بانک오브아메리카(BoA) 서울지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계 시중은행으로 은행업 및 금융투자업에 종사함. 이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2009.12.18.)에서 확인됨. 이 보도자료는 BoA 서울지점이 메릴린치인터내셔널은행 서울지점을 양수하고 메릴린치인터내셔널은행 서울지점은 폐쇄하는 것을 금융위원회가 인가 및 승인한다는 내용임. 이 보도자료는 BoA 서울지점이 메릴린치인터내셔널은행 서울지점(투자매매업)을 양수하기 이전에 이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 투자매매업(통화·이자율·장외파생상품)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

- BoA 서울지점은 민간상업은행으로서 미 국방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주한미군 영내 은행인 커뮤니티뱅크(CB)<sup>1)</sup>를 운영해 오고 있음. 이는 BoA가 영리목

1) 커뮤니티뱅크 홈페이지(2021.8.17 검색)는 CB가 미 국방부 소유 은행프로그램이며 민간상업은행인 BoA

적(수익창출 목적)으로 커뮤니티뱅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뜻함. 언론보도에 따르면 CB 노사회의에서 사측은 노조(주한미군 한국인노조) 측에 “CB는 미국의 해외주둔 장병과 군속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다. CB는 운영 경비를 자체 조달하고 있다. 그래서 CB를 비영리은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시사저널, 2016년 5월 18일)고 밝혔다고 함. 여기서 CB 사측은 곧 BoA측을 뜻함. BoA가 직원을 CB에 파견해서 CB를 일종의 지점처럼 관리운영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임. BoA 서울지점이 CB를 영리방식으로 운영하여 수입을 얻고 이 수입을 운영경비로도 쓰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BoA 서울지점이 CB를 운영하면서 얻는 주 수입원의 하나가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한 이자수입이라고 할 수 있음. BoA 서울지점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건넨 방위비분담금(현금)을 ‘미8군 군사은행(BoA)’ 명의로 국내 및 외국계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거나 단기성 양도성예금증서(CD)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일정한 금액의 이자소득을 올려왔음. BoA 서울지점은 CB(커뮤니티 뱅크)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06년에 204억 원, 2007년에 362억 원의 이자소득을 올렸다고 한국 법원의 사실조회 답변서<sup>2)</sup>에서 밝힌 바가 있음. 이런 BoA의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한 이자소득 수취는 최근 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 시사저널은 BoA가 미8군 군사은행(BoA) 명의로 시중은행에 2010년 7월, 2012년 11월, 2014년 4월 기준으로 각각 1조3730억 원, 1조850억 원, 7650억 원을 예치해 그로부터 각각 101억 원, 82억 원, 44억 원의 이자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음.(시사저널, 2016.5.18.) 이런 BoA의 미8군 군사은행(BoA) 명의의 이자소득 수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함. 그것은 미국(주한미군)이 보유한 미집행 현금이 2018년 12월 말 현재 2,880억 원에 달하고, 또 한국이 주한미군에 건넨 설계감리비 가운데 쓰고 남은 현금도 4600만 달러(당시 환율 적용 시 약 508억 원)<sup>3)</sup>에 이르기 때문임. 뿐만 아니라 매년 인건비 명목으로 대략 5000억 원의 돈이 3차례에 걸쳐 나눠서 주한미군에 지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BoA가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방위비분담금은 그 규모가 최소 5,000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여짐.

가 미국방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CB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https://www.dodcommunitybank.com/home/careers/about>)

2) 2009. 7. 30, 사실조회 답변서는 BoA가 2-3개월짜리 단기성 예금증서 투자를 통해 이자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음.

3) 2018년 방위비분담금 연례집행보고서

(2) BoA 서울지점이 방위비분담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소득을 자신의 사업소득으로 수취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과세해야 함.

- BoA 서울지점이 CB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을 운용해 이자소득을 올렸다는 것은 곧 BoA 서울지점이 이자소득을 자신의 사업소득으로 취하였다는 것을 말함. CB의 사측. 곧 BoA측이 노조 측에 CB의 운영경비를 자체조달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는 곧 CB에 고용된 직원(BoA 소속 및 한국인 직원)의 임금 지불 등에 이자소득의 일부가 쓰였음을 뜻함.

- 미 국방부도 한국 정부에 보낸 답변서(2015.9.8.)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은 CB 운영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음<sup>4)</sup>. 이런 답변 역시 방위비분담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소득의 일부가 BoA의 운영경비로 쓰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그만큼의 이자수입이 BoA에 귀속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임.

- 한편 BoA 서울지점은 이자소득을 미 국방부에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BoA가 이자소득을 수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BoA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상업은행이고 CB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설사 미 국방부에 이자수익을 보냈다 하더라도 BoA 서울지점 자신 또한 이자수입을 수취했을 것임은 당연한 것임.

(3) 국세청은 BoA 서울지점이 얻은 이자소득에 과세해야

- BoA 서울지점은 CB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 또 '미8군 군사은행(BoA)' 명의로 방위비분담금을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올리고 그 일부를 CB 운영비로 쓰는 등으로 영업이익을 추구하고 있음.

- 2014년 1월, 황준국 당시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미국 쪽 협상팀이 '방위비분담금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커뮤니티뱅크는 사실상 민간은행이기 때문에 과세 문제는 한국이 관련 법령에 따라 할 일"이라고 말했다"<sup>5)</sup>고 밝힌 바가 있음. 여기서 '커뮤니티뱅크가 사실상

4) 출처 : 커뮤니티뱅크 이자 문제 관련 보고, 국방부 국회 보고자료, 2015.10

민간은행'이란 미국 쪽 협상 팀의 발언은 커뮤니티뱅크가 미 국방부 소유 은행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민간상업은행인 BoA 서울지점이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영리목적으로 커뮤니티뱅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마땅히 BoA 서울지점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음. BoA 서울지점은 이자소득의 일부를 미국 국방부로 송금하면서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법원의 사실조회<sup>6)</sup>에서 밝히고 있음. BoA가 자신이 운영하여 얻은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비로 쓰거나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미 국방부에 송금한 것은 탈세행위임. 이에 국세청은 민간상업은행인 BoA가 그동안 얻은 이자수익 전체에 대해서 과세해야 함.

#### (4) BoA 서울지점이 CB를 운영하면서 얻은 이자소득은 면세대상이 아님

- 미 국방부는 2015년 9월 8일 한국정부에 보낸 답변서에서 커뮤니티뱅크를 운영하는 BoA 서울지점이 한미소파 15조 상의 초청계약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이런 미 국방부의 주장은 BoA 서울지점의 CB 운영이 면세대상임을 강변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받아들여서도 안 됨.
- 초청계약자는 한미소파 제15조1항에 의하면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외국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로서 합중국 정부가 초청계약자로 지정한 자”를 말함.<sup>7)</sup> 그러나 BoA 서울지점은 주한미군을 위한 미국정부와의 계약이행만을 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자가 아니며 CB운영 이외에도 기업을 상대로 한 투자매매업(통화·이자율·장외파생상품)을 본업으로 하는 민간상업은행임. 따라서 BoA는 한미소파상 초청계약자가 될 수 없음. 만약 미 국방부가 BoA서울지점을 초청계약자로 지정하였다면 이는 한미소파 위반이므로 이를 철회해야 할 것임. 아울러 BoA 서울지점은 초청계약자가 될 수 없으며

5) 한겨레, 2015.10.2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14250.html>

6) 각주 2번의 사실조회 답변서

7) 육군본부, 『행정협정해설서』, 1988, 125쪽

로 당연히 BoA 서울지점의 CB운영에 따른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되어야 함.

- 설사 BoA 서울지점이 초청계약자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BoA가 CB 명의(미군사은행 명의)로 얻은 이자수익은 과세가 면제될 수 없음. 한미소파 15조(초청계약자) 7항은 “본 협정에 규정된 어느 것의 시설이나 구역의 건설, 유지 또는 운영에 관한 합중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타의 과세기관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렇지만 이어서 한미소파 15조7항은 “본 항의 첫 단에 규정된 원천(합중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지칭함) 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라고 하여 한국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음. BoA 서울지점이 얻은 이자소득은 미합중국과의 계약에 의하여 얻은 소득이 아니라 BoA가 국내 시중은행에 방위비분담금을 예치하는 등으로 얻은, 즉 대한민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임. 그렇기 때문에 BOA가 수취한 이자소득은 한미소파 제15조 7항 상의 면세 대상이 될 수 없음.
- 한미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에 따르면 “이자, 어느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BoA가 수취한 이자소득은 미국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미국의 거주자에 의해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미국에 원천을 둔 소득이라 할 수 없음. 조세조약 제6조는 앞의 인용에 이어서 “동 이자를 지급하는 인(그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음)이 그 이자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에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일방 체약국내에 두며 또한 동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이자, 고정이 사업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 내에 원천을 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BoA 서울지점이 수취한 이자소득은 국내 시중은행 또는 외국계은행이 지급한 것으로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 한국에 소재하고 그 고정사업장이 이자를 지급한 것이므로 BoA가 수취한 이자소득의 원천은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음. 즉 BoA 서울지점이 수취한 이자소득은 미국정부와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대한민국에 원천을

돈 소득이므로 당연히 과세대상이 됨.

### 3. 이자소득 총 규모는 약 4천억 원

#### (1) 미집행현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추정액

- BoA 서울지점은 CB를 운영하면서 2006년에 204억 원, 2007년에 362억 원의 이자소득을 올렸다고 한국법원의 사실조회 답변서(2009.7.30.)<sup>8)</sup>를 통해 밝힌 바 있음. 이런 이자소득은 그 이자 원천이 한국이 군사건설비조로 현금으로 지급한 방위비분담금 중 집행하지 않고 미국이 우리 국민 몰래 빼돌려 불법 축적한 돈임. <표1> 및 <표2>에는 미국(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한국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은 군사건설비 가운데 집행하지 않고 빼돌린 돈과 그 중에서 사후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현금이 연도별로 나와 있음.
- <표1>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BoA가 미집행현금을 운용해 거둔 이자소득을 추산해 본 것이며 이자소득 총 누적액은 2,860억 원이 됨.<sup>9)</sup>

**<표1>2003~2013년 미국 보유 방위비분담금 현금 및 이자 현황 추정**

연도	미집행 현금 규모*	추정 이자액(금리,%)**	이자액 누계
2003년	약 2,000억 원	86억 원(4.3)	86억 원
2004년	약 4,000억 원	152억 원(3.79)	238억 원
2005년	약 6,000억 원	219억 원(3.65)	457억 원
2006년	약 8,000억 원	<b>204억 원****</b>	661억 원
2007년	약 1조 원	<b>362억 원****</b>	1,023억 원
2008년 10월	<b>1조 1,193억 원**</b>	615억 원(5.5)	1,638억 원
2009년	약 1조 원	260억 원(2.6)	1,898억 원
2010년	약 9천억 원	243억 원(2.7)	2,141억 원
2011년	약 8천억 원	272억 원(3.4)	2,413억 원

8) 2009. 7. 30, 사실조회 답변서는 BoA가 2-3개월짜리 단기성 예금증서 투자를 통해 이자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음.

9) <한겨레> 2013. 11. 19,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잔액 이자만 5년간 1600억대 추정"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611762.html#csidx7211455b28073e48e1d76ead1436fd4>

2012년 9월 말	<b>7,611억 원**</b>	251억 원(3.3)	2,664억 원
2013년 8월 말	<b>7,111억 원**</b>	196억 원(2.76)	2,860억 원

\* 2003~2007년 미측 보유 미집행 현금 규모는 군사건설비가 현금으로 지급되던 시기에 대해 2,000억 원씩 축적했다고 가정한 것이며, 2009~2011년 미집행 현금 규모는 미측이 매년 1,000억 원씩 소진했다고 가정한 것임.

\*\* 미측 보유 미집행 현금 규모 출처는 10차 방위비분담협정 외통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2019.3) 등

\*\*\* 추정 이자액의 경우 해당연도의 평균 양도성 예금증서 이율을 곱해서 나눔.

\*\*\*\* 2006년, 2007년 이자액 출처는 BoA의 사실조회답변서임.

- <표2>는 2014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이 군사건설비에서 축적한 1조1,193억 원 중 쓰고 남은 미집행현금의 연도별 규모를 보여주고 있음. 이 자료는 주한미군사령부가 우리 국방부에 제출한 주한미군 보유 방위비분담금 현금 자료에 따른 것임. 이를 근거로 추정하면 2014~2020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합계도 약 39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임.

**<표2> 2014~2020년 미국 보유 방위비분담금 현금 및 이자 현황**

연도	미집행 현금 규모*	추정 이자액(이자율(%)**)	이자액 누계
2014년 1분기	5,140억 원	128억 원(2.49)	128억 원
2015년 1분기	3,425억 원	60억 원(1.76)	188억 원
2016년 1분기	2,883억 원	43억 원(1.49)	231억 원
2017년 1분기	2,883억 원	42억 원(1.44)	273억 원
2018년 1분기	2,884억 원	48억 원(1.68)	321억 원
2019년 4분기	2,814억 원	48억 원(1.69)	369억 원
2020년 4분기	2,540억 원	23억 원(0.92)	392억 원

\* 미집행 현금 규모 출처 : 11차 방위비분담협정 외통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2021.8) 등

\*\* 이자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연평균 금리를 적용함.

- BoA가 방위비분담금 중 미측이 불법으로 축적한 미집행 현금을 운용하여 얻은 이자소득 총액은 최소 3,252억 원(2,860억 원 + 392억 원)이 될 것임.

(2) 미집행현금 이외의 현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소득 추정

- BoA 서울지점이 이자수익을 위해 운용한 방위비분담금에는 미집행현금만 있는 것은 아님. 한국은 매년 군사건설비의 12%(연간 400억 원 이상)를 설계감리비조로 현금으로 주한미군에 지급해 왔음. 미국은 이 원화 현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보관하였음. 이 달러표시 현금도 이자를 발생시켜 왔을 것으로 추정됨.
- 시사저널(2015.5.22.)은 BoA가 운용한 자금 중에는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용산미군기지이전비용조로 한국이 주한미군에 건넨 현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하고 있음. BoA 서울지점이 2012년 11월13일 현재 ‘미8군 군사은행(BoA)’명으로 “1조850억 원을 한국의 4대 시중은행과 HSBC에 2.70~3.29% 이율로 100일 안팎의 단기 정기예금에 예치해 82억 원이 넘는 이자 수익을 냈다. 2012년 한 해 동안 300억 원대의 이자가 발생한 것이다.”(시사저널 2015.5.22.)고 보도하고 있음. 시사저널은 1조850억 원에는 용산미군기지이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함. 위 <표1>을 보면 2012년에 미집행현금이 7,611억 원으로 나와 있는 바, 이를 제외한 3,239억 원(1조850억 원의 30% 정도) 중에는 용산미군기지이전비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보임. 용산미군기지이전비 조로 지급한 현금 역시 우리 국민세금이므로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과세되어야 함은 당연함.
- 시사저널은 CB 내부 자료(2010~2014년)를 입수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음. “방위비분담금을 예치한 은행과 예치금, 예치 기간, 이자율 등 이자수익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정확히 산출돼 있다. 이 내부 문서에 따르면, CB는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매년 지불한 1조원에 이르는 돈을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에 약 3~4개월 단위로 2~3%대 이율의 정기예금(TD)에 분산 예치했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는 최소 약 100억 원이었다. 연간으로 따질 경우 최소 300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시사저널, 2016년 5월 18일)

**주한미군 시중은행 예치금액과 이자 수익**

	2010년 7월13일 기준	2012년 11월13일 기준	2014년 4월8일 기준
예치금액	1조3730억원	1조850억원	7650억원
이율	2.02~2.97%	2.70~3.29%	2.50~2.63%
이자 수익	101억9132만6628원	82억400만8208원	44억4249만3143원

※2014년 4월8일 기준 예치금액에는 2014년 새로 책정된 방위비분담금 9200억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한·미 양국 간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이 늦어져 2014년 책정된 방위비분담금(9200억원) 집행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시사저널에서 보도된 3~4개월 단기성 예금증서를 통해 얻은 수익규모

- BoA의 한국법원 사실조회 답변서나 언론보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추정 등을 종합하면 2010년 이후에도 BoA는 군사건설비의 미집행현금 잔금과 설계감리비, 3회에 걸쳐서 나눠 지급되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연간 5,000억 원정도), 용산미군기지이전비 등을 합친 대략 1조원 안팎의 돈을 운용하고 여기서 매년 적으면 100억 원 많으면 300억 원 정도의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여겨짐. 최근 들어서는 미집행현금 잔액이 2,500억 원 수준으로 줄고 한국이 주한미군에 건네는 용산미군기지 이전비도 그 규모가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많이 줄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억 원의 현금이 '미8군 군사은행(BoA)' 명의로 국내 시중은행에 예치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할 것임.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미집행현금 이외 BoA가 운용한 방위비분담금과 용산미군기지이전사업비 등이 3,000억 원 정도로 될 것으로 보고 연평균 이율을 2.0%로 상정하면 그에 따른 이자소득은 660억 원으로 추정됨. 여기에 미집행현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수익 3,252억 원을 더하면 BoA는 4,000억 원 안팎(대략 3,912억 원)의 이자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임.

#### 4. 국세청은 이자소득세 약 470억 원 징수하여 조세 주권을 실현해야

- BoA가 얻은 이자소득은 방위비분담금의 미집행현금의 경우 약 3,252억 원임. 한미조세조약 13조 2항에 따라 세율 12%를 적용하면 그에 따른 이자소득세는 약 390억 원임.
- BoA가 미집행현금 이외의 방위비분담금 및 용산미군기지이전비 등을 운용해서 얻은 이자수익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대략 660억 원이며 여기에 세율 12%를 적용하면 79억 원임.
- 국세청은 BoA 서울지점이 얻은 방위비분담금 등의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 결정을 내리고 약 470억 원의 세금 징수에 나섬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함.